[별표 2]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기관 지정 심사방법

평가항목	심사항목	심사방법
일반요건	가. 「민법」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일 것 나. 법인의 설립목적 또는 사업 범위에 정보보호제품의 시험 및 평가 업무를 포함한 법인일 것 다. 정보보호제품을 생산·개발·유통·판매하는 법인이 아닐 것	서류
조직과 인력	가.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(ISO/IEC 17025)에 따른 요구사항에 적합한 조직을 보유할 것 나. 시험 및 교정기관에 관한 국제표준(ISO/IEC 17025)에 따른 제3자 기관일 것 다. 정보보호제품 성능평가 주임평가자 자격을 보유한 평가자 4명 이상을 보유할 것	서류
사무 및 시험공간	가. 성능평가 업무 수행을 위한 독립된 사무 및 시험공간을 보유할 것 나. 시험공간에 신원 확인 및 출입 통제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	서류 · 현장심사
설비	가. 정보보호제품 분야별 성능평가에 필요한 설비를 구비할 것 (예시, 서버, 네트워크 장비, 운영체제, 성능측정 장비, 보안 취약점 점검도구 및 모의해킹 도구 등) 나. 기록 및 자료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	서류 · 현장심사
운영절차	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한 성능평가 기준에 따른 정보 보호제품 분야별 평가방법 및 시험절차 등을 보유할 것	서류 · 현장심사